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경상남도, 함양군, 중흥건설(주),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경상남도 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경상남도, 함양군, 중흥건설(주), 경남개발공사는 본 협약을 기반으로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최대한 협력한다.

제3조(협력사항) 경상남도, 함양군, 중흥건설(주), 경남개발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상남도, 함양군, 중흥건설(주)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한다.
- 경상남도 : 5천만원, 함양군 : 5천만원, 중흥건설(주) : 2천만원
2. 경상남도, 함양군, 경남개발공사는 사업대상지 발굴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3. 함양군은 사업대상지 선정, 청년주택 입주자 및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4. 경남개발공사는 위탁받은 사업비로 리모델링, 집기구입, 최초 입주자모집 등 사업을 시행한다.
5. 기타 상호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력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협약기간) 이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사업완료시까지로 한다.

제5조(실무협의회 운영)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속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경상남도, 함양군, 중흥건설(주), 경남개발공사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한다.

제6조(비밀유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되는 상대기관의 업무내용이나 이와 관련하여 비밀이 요구되는 사항은 상대기관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언론공개, 자료활용, 정보이용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7조(협약내용의 변경)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준수) 각 기관은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협약서 4부를 작성하여 1부씩을 보관한다.

2023년 12월 12일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곽근석



부군수 서 **창우**

서창우



대표이사 **백승권**

백승권



사장 **김권수**

김권수